

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

※ 어두운 난(■)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15일
신고인	조합명			
	대표자			
	조합 또는 사무소 소재지	(전화번호:)		
신고 사항	건설예정지역		대지 면적(㎡)	
	건설예정 세대수		조합원 수	
	주택 유형		호/세대당 주택 규모(㎡)	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원 모집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조합대표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 2.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·지목·등기명의자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. 조합원 모집공고안 4. 조합 가입 신청서 및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
------	---

처 리 절 차							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신고확인증 작성	→	신고확인증 발급
처 리 기 관: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, 시·군·자치구(주택담당 부서)										